

## 정년보장교원 임용규정

제정 2012. 3. 1.  
 개정 2016. 3. 1.  
 개정 2017. 3. 1.  
 개정 2017. 6.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청강학원 정관 제39조의2에 의해 정년보장교원으로 임용할 교원의 심사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대상자)** ① 정년보장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교원(이하 “임용대상자”라 한다)은 교원인사규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본 대학의 교원 중에서 교수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교원으로 한다.

② 정관39조의2에 정하는 교수 승진에 필요한 요건은 교원인사규정 제22조 및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정년보장교원의 수)** 정년보장교원의 수는 전임 교원이상 재직교원의 30%를 넘을 수 없다.

**제4조(심의기준)** ① 임용대상자는 교수승진심사청구서 및 이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6.1. 개정)

③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임용대상자의 자료를 평가함에 있어서 정년보장교원으로서의 활동 계획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정년보장교원 승진임용 심의는 다음의 내용으로 실시한다.

구분	세부내역	반영비율	비고
교원업적평가 결과	승진소요년수 기간 중 교원업적평가 평균점수	60%	
개인역량평가	교원업적평가 개인영역 중 자율지표 정성평가	20%	
교수자질 및 발전가능성 평가	부총장 보직교수 평가(10%),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평가(10%)	20%	평균점 산출

⑤ 총장은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임용대상자에 대해서 제4항의 인정점수(100점 만점 기준)에 추가하여 대학발전 부문의 실적으로 5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평가절차)** 정년보장교원 임용평가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정년보장교원임용대상자 추천)** 제4조의 심의기준에 의해 산출된 총점(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인 자에 한해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정년보장교원임용대상자로 총장에게 추천한다.

**제7조(정년보장교원의 임용 제청)** ① 정년보장교원은 제2조 제2항 및 제6조에 의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6조에 의한 정년보장교원임용대상 추천자 중 대학경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제3조의 범위 내에서 임용 제정한다.

**제8조(제출서류)** 정년보장교원 임용을 원하는 임용대상자는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의거 교수 승진을 위한 제출서류를 승진임용일 4월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 청강학원 정관과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등의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임용한 교원은 이 규칙에 의해 임용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년보장교원 임용평가 절차

정년보장교원 임용평가 절차

순번	절차	내용	담당부서	비 고
1	정년보장교원임용 청구대상자 안내	· 교원인사규정 제22조 및 동 시행세칙 제3조에 의거 정년보장교원임용청구대상자 파악 및 제출서류(서식1) 안내	교원인사 담당부서	
2	교수승진심사 청구서 제출	· 정년보장교원임용청구대상자 제출서류 접수 · 신청자에 한해 임용심사대상자로 선정	교원인사 담당부서	
3	스쿨정년보장인사 위원회 구성	→ 스쿨 정년보장인사위원회는 스쿨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7인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위원회 구성	스쿨	위원회는 사안종결사 자동해체
4	스쿨정년보장인사 위원회 개인평가기표 작성	→ 교원인사 담당부서에서 접수된 교수승진심사 청구서를 스쿨정년보장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송부 → 스쿨정년보장인사위원회 위원은 찬성 또는 반대를 명시한 평가기표(서식2)를 무기명으로 작 성하여 위원별로 교원인사 담당부서에 제출	스쿨정년보장 인사위원회, 교원인사 담당부서	
5	스쿨정년보장인사 위원회 (의견서 작성)	→ 교원인사 담당부서에서 개별 접수된 평가기표 를 스쿨정년보장인사위원회(위원장)에 전달 → 스쿨정년보장인사위원회에서 종합검토의견서 (서식3)을 작성하여 교원인사담당부서로 송부	스쿨정년보장 인사위원회	
6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위원회 개최	·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스쿨정년보장 인사위원회에서 찬성의견으로 의결된 정년보장 교원 임용신청자의 제출서류 및 스쿨정년보장 인사위원회 의견을 참조하여 정년보장교원 임용에 대한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 평가기표 (서식4)를 작성 · 부총장 보직교수는 보직교수 평가기표(서식5)를 작성 · 교원업적평가 결과, 개인역량평가, 정년보장 교원임용심사위원회 평가 등 평가심의기준에 의해 대상자 추천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 회	부총장, 실처장 보직교수가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 일 경우 중복 평가하지 않음.
7	교원인사위원회	·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추천된 대상자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	교원인사 위원회	
8	총장 제청	· 총장의 결재를 받아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학교법인(이사회)에 제청	총장	
9	이사회 의결 및 결과 통보	·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상자에게 결과 통보	교원인사 담당부서	

(서식 1) 교수 승진심사 청구서

## 교수 승진심사 청구서

---

본인은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 승진심사 청구자격을 갖추어 교수승진 심사용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본인은 승진심사용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본 서류를 진실하게 작성하였음을 밝히며 거짓이 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서식1〉 교육·산학·연구·봉사활동 업적 1부  
 〈서식2〉 자기발전계획서 1부

붙 임 : 교수승진심사용서류 1부

제 출 자

스 쿨	
직 급	
성 명	(인)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장 귀하

## 교육 · 산학 · 연구 · 봉사활동 업적

※ 작성요령 : 이전(부교수) 승진일 이후의 주요업적을 기술해 주십시오.

○ 기 간 : . . . ~ . . . .

1. 교육(강의)활동 영역
  
2. 산학협동 영역
  
3. 연구 및 제안실적
  
4. 봉사 영역(교내 · 외)
  
5. 학교발전을 위한 업적(Only One Item 포함)
  
6. 리더십 영역
  
7. 상별사항

## 자기발전계획

※ 작성요령 : 승진 후 교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주십시오.  
특히, 스쿨(부서)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활동 영역(강의계획, 교수법 개선 방안 등)
2. 산학협동 영역(산학 네트워크 활용 방안 등)
3. Only One Item
4. 취업률 향상에 대한 공헌 방안
5. 승진 후 활동 계획

(서식 2) 스텝정년보장인사위원회 위원 평가표 (삭제) (2017.6.1.)

(서식 3) 스텝정년보장인사위원회 의견서 (삭제) (2017.6.1.)



